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지정 []변경지정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통보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항만시설 소유자	항만시설의 명칭(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팩스번호	
	주소		홈페이지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업무대행자 (보안담당자)
대상 항만시설	부서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성명
	직위	생년월일	팩스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변경내용 및 자격요건 확인

현행	성명		직위(직급)		지정일	
	성명		직위(직급)		지정일	
변경	자격요건		경력요건		적격여부	
			전문지식요건		적격여부	

< 비 고 >

- 경력요건: 항만시설 운영에 종사한 경력 또는 보안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전문지식요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6항 각 호(제3호·제4호 및 제6호는 항만시설에 관련된 내용만 해당합니다)의 내용이 포함된 보안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사람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는 별지에 추가로 적을 수 있습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 지정(변경지정)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 보 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